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 및 병·의원 대응방안

배 세 옥

새오름 노무법인 대표노무사
sorlc@naver.com



〈편집자 주〉 올해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으로, 작년 대비 16.4% 인상된 수준이다. 최저임금 인상 폭이 두 자릿수를 넘김에 따라, 중소기업인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지고 있으며, 인건비 부담이 늘어 고용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의료서비스 영역은 그 특성상 노동집약적이며 대부분의 서비스를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분야이다. 이로 인해 의원과 중소병원급 의료기관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충격파를 걱정하는 분위기이다. 이에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 병의원에 미칠 영향력을 실제로 분석해보고, 의료기관 경영자로서 의사들이 합리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한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다.

I. 서론

이번 겨울은 맹추위가 일찍 찾아온 듯하다. 작년 12월 초부터 영하 10도의 날씨를 연일 오르내리고 있다. 최저임금은 역대 최고의 인상폭을 보이고 있어서 북풍에 한파처럼 뻗속 깊이 몰아치고 있다. 더욱이 최저임금은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까닭에 모든 병의원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이 병의원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II. 최저임금의 기본 내용

1.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노사 간 임금 결정 과정에 직접 개입하여 임금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임금 최저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여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2.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과 산입되지 않는 임금 알아보기

직원의 월급은 최저임금 이상의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미달이 될 수 있다. 즉 월급자체로 최저임금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최저임금에 들어가지 않는 급여항목이 있어서 주의를 요한다.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임금이란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서 소정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을 말한다. 병원에서 주로 사용하는 항목을 들자면 기본급, 직책수당, 자격수당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유형은 3가지인데 ①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임금인 상여금, ② 소정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 이외의 임금인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연차수당, ③ 그밖에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것으로 식대, 차량유지비 등이 있다.

3.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 영향에 대한 2가지 시각

2017년 최저임금은 6,470원이다.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인상하였다. 16%여 가량이 인상된 것이다. 이러한 인상은 이례적으로 높은 경우인데 미국 시애틀에서도 2년 동안 약 16% 썩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있었다. 이러한 최저임금 인상의 결과는 어떠하였을까? 최근 UC버클리 와 워싱턴 주립대가 서로 다른 결과를 내놓았다. UC버클리는 최저임금인상은 사업주가 가격인상을 하고 고용은 줄이지 않았고, 직원의 소득은 인상되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반하여 워싱턴 주립대는 사업주가 고용을 줄이고 직원은 소득이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상반된 결론을 내렸다. 결국 최저임금인상의 효과는 결론이 나지 않고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우리의 병의원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III.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구성 금액

최저임금위반에는 강력한 형사처벌이 예정되어 있어서 최저임금에 따른 임금구성을 알고 있어야 한다. 최저임금인상에 따라서 근무시간별 최저수준의 임금 구성항목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 이하에서는 근무형태별로 최저임금에 따른 최저기준의 임금의 구성에 대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

1. 4인 이하 병의원에서의 임금의 구성

1) 주 40시간 근무하는 병의원
(간접비=4대 보험+퇴직금)

(단위:원)

시급	기본급	연장수당	월급	간접비
7,530	1,573,770	0	1,573,770	279,378
총합계 : 1,853,148				

2) 주 45시간 근무하는 병의원

(단위:원)

시급	기본급	연장수당	월급	간접비
7,530	1,573,770	163,401	1,737,171	308,394
총합계 : 2,045,565				

3) 주49시간(평일 연장 있고 토요일근무 시)

(단위:원)

시급	기본급	연장수당	월급	간접비
7,530	1,573,770	294,122	1,867,892	331,680
총합계 : 2,199,500				

2. 5인 이상 병의원에서의 임금의 구성

1) 주 40시간 근무하는 병의원

(단위:원)

시급	기본급	연장수당	월급	간접비
7,530	1,573,770	0	1,573,770	279,378
총합계 : 1,853,148				

2) 주 45시간 근무하는 병의원

(단위:원)

시급	기본급	연장수당	월급	간접비
7,530	1,573,770	245,102	1,818,872	332,903
총합계 : 2,141,775				

3) 주 49시간(평일 연장 있고 토요일근무 시)

(단위:원)

시급	기본급	연장수당	월급	간접비
7,530	1,573,770	441,183	1,867,892	357,713
총합계 : 2,372,666				

상기의 구성에 따른 임금보다 낮으면 반드시 그 이유를 확인하여야 한다.

IV. 대응방안

1. 병의원의 근무조건 조정

최저임금에 대한 방식은 임금조정과 시간조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서 4가지의 조합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1) 임금수준의 인상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임금자체를 인상하는 방식이다. 최저임금 인상수준으로 임금을 인상시키면 되기 때문에 가장 단순명쾌하다. 최저임금 수준에 있는 사람은 16% 임금의 인상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23만 원 정도 인상). 이러한 인상의 방안은 심플하지만 인건비의 압박을 받는 병의원에서는 도입하기 어렵다는 점이 한계다.

2) 임금체계의 변경

임금체계의 변경은 크게 2가지 유형을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임금의 구성항목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임금의 구성항목에서 식대나 차량유지비,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무관하므로 이러한 수당 일부를 최저임금 해당항목으로 산입을 함으로써 조정하는 것이다. (현재 상여금 등의 최저임금 산입은 논의 중임) 예를 들어, 월급여가 170만원이고 기본급이 160만원 식대 10만원인 직원은 최저임금 미달이 아니다.

반면 월급여가 200만원인 직원이 기본급이 150만원이고 연장수당 20만원 식대10만원 차량유지비 20만원으로 수당이 구성되어 있다면 2018년 최저임금 미달인 것이다. 이때에는 식대나 차량유지비를 조정하는 것을 고민하여야 한다.

또 다른 방식은 세후로 계약하는 관행을 세전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150만원이 세후금액인 경우 세전으로 환산하면 160만원이 넘게 되므로 최저

임금위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즉, 2018년 기준으로 150만 원 실수령액으로 계약하면 최저임금 미달이지만 160만 원 이상의 세전으로 계약하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게 되므로 세후계약을 하여 최저임금 미달인 병의원에서는 세전계약으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3) 근무시간 단축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은 근무시간을 줄임으로써 임금상승을 억제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주로 쓰이는 방식은 토요일 근무대신에 평일 오후 반차를 주는 방식과 평일 연장을 줄이는 방식이 주로 쓰인다. 이러한 근무시간 단축은 현재 선호하는 방식으로 보인다.

4) 근무형태의 변경

근무시간을 직원별로 탄력적으로 편성하거나, 교대제로 근무시간을 편성하는 방식 등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직원의 근무시간의 단축을 가져온다.

5) 종합적인 방법

임금조정과 시간조정을 함께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어느 한쪽을 택하였을 때의 문제점을 완화시킬 수 있다. 다만 임금조정과 시간조정이 구성원의 충분한 이해와 협조 하에 진행하는 것이 관건이다.

2. 국가지원 시책의 적극적 활용

최저임금인상에 따라서 두리누리 지원금 확대와 일자리 안정자금에 예정되어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은 ① 사업장의 요건은 30인 미만사업장일 것, 법인의 경우 당기순이익이 5억 미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5억 미만일 것이고, ② 근로자의 요건은 월급이 190만원 미만의 근로자이다. ③ 지원금액은 매월 일정금액이 지급되는데 40시간 이상근로자는 13만원, 30~40시간미만 근무자는 12만원, 20~30시간미만 근로자는 9만원, 10~20시간미만 근로자는 6만원, 10시간 미만근로자는 3만원이다. ④ 신청방법은 4대 보험공단 사이트에서 신청하거나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V. 마무리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당장에 부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병의원과 직원이 함께 보다 행복해지는 문이 활짝 열린 것일 수도 있다. 언제나 그랬듯이 병의원은 주어진 문제에 대하여 최적의 길을 찾아가게 될 것이다.